

大學 福祉의 실상과 과제

朴 宗 三

(崇實大 社會事業學科)

1. 大學共同體 : 삶과 學問探究의 터전

대학은 원래 교수진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상아탑으로서의 단일한 공동체로 출발했다. 풍부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로부터 막강한 재정지원을 받으며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로 구성된 대학공동체는 구미의 여러 나라 안에서 상류사회를 이룩한 가운데 대학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공동체 안에서 복지문제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결국 대학의 문제를 논할 때 교육이념, 학생선발, 교수의 연구와 자질 향상 등은 심각하게 토론되었으나 대학의 재정확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문제, 연구비 증당 등의 과제는 이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온 것이 구미 대학사회의 전통이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대학이 이 땅에 설립되었으나, 구미의 대학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열악한 재정형편과 시설로 대학의 문을 열게 됨으로써 그 시작부터 大學共同體 안에 福祉 문제를 내포하고 오늘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학시설이나 재정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오로지 학생의 정원수를 늘리는 것 뿐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는 몰라도 정부는 국가의 급속한 경제개발정책에 뒤따라야 하는 고급기술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大學定員의 증원 정책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여건에 의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고, 또한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낮은 교육비로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 온 배경에서 대학은 수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재단의 재정 기반 취약,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가중, 대학운영 인력(교수·행정직원 등)의 증가, 제한된 공간과 시설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우리 대학사회는 의형적 비대화에 따른 大學人口의 급격한 팽창과 그에 부응하는 대학의 福祉政策 부재로 인해 교육이나 복지 환경이 낙후되어 질 높은 대학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오늘의 대학공동체는 단순히 교수와 학생으로 성립된 교육기관이 아니다. 학교를 설립한 財團과 理事會, 일생을 대학에 몸담고 교육과 연구를 실천하는 敎授陣, 대학 본래의 교육목적 을 달성하게끔 행정적으로 돕는 行政職員, 그리고 대학공동체의 절대 다수를 이루며 대학재정

의 확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學生集團 등 대학사회는 네 개의 강력한 하위집단들로 구성·운영된다. 이러한 하위집단들은 대학공동체내에서 각기 자기들의 福祉欲求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력한 집단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정된 대학공동체의 복지자원을 둘러싸고 하위집단들간에는 날카로운 갈등관계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사회, 교무위원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 조교연합회, 서클연합회 등 대학공동체 안에는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利益集團이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 노동조건과 환경여건 개선, 연구비와 연구시설, 등록금 인상, 교육시설,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와 기숙사, 식당, 의료시설, 운동시설, 장학금, 자판기 운영 등등 직접적인 학생복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를 날카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대학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 수행마저 약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학문탐구라는 고상한 교육목적만을 수행하는 터전이 아니고, 대학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의 '실존적 삶의 터전'이다. 특별히 교수나 직원의 경우, 4년 동안 공부한 후 졸업하여 캠퍼스를 떠나는 학생들과는 달리 그들의 전체 생산적 삶의 기간을 대학 캠퍼스에서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복지정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대학 구성원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학당국의 대응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별히 學生과 時間講師의 복지문제는 대학당국이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대학공동체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體系的 福祉政策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공식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거대한 대학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교수·학생·직원·이사회가 좀더 의도적·체계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활동을 대학안에서 전개하여야 한다는 대학공동체의 복지이

념이나 실질적인 필요성 또는 책임성을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대학 복지정책의 실상과 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現實的問題를 제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에 입각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國家의 經濟開發政策과

大學 福祉政策

오늘날 우리 대학공동체 안에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대학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복지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분석한다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어떻게 대학사회에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教育은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제성에 관하여 Abraham Flexner는 "대학은 주어진 시대의 일반적 사회조직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대학은 시대의 표현이요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가지로 작용하는 영향"이라고 하였다.

대학교육에 영향을 준 우리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은 어떻게 구성되었던가? 1961년 이후 정권을 잡은 軍部 엘리트들은 권력정당화의 맥락에서 경제성장정책과 아울러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76년까지는 경제성장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었고 사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制限的으로 실시하였다. 공식적으로 '사회개발' 또는 '사회적'인 것은 제 4차 5개년계획(1976~1981)부터 비로소 '경제개발'에 첨가되었다. 그러나 '80년초 유희파동으로 인해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개발 내지 사회복지개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노동자의 임금정책, 빈곤계층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체계의 확립이 늦

어지게 되었다. 결국 '80년대 복지국가 내지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기간중 우리 정부가 교육에 투자한 액수는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위권에 속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教育投資가 초등교육에 집중됨으로써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가 빈약해져 大學福祉에 직접적인 否定的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교수나 직원들의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대학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의료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가가 대학에 요구한 것은 심오한 사상과 영원한 진리의 탐구보다는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실용적 지식 추구하고 전문화된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습득이었다. 이렇듯 국가의 경제개발 일변도 정책은 빈곤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던 '60, '70년대의 국민들에게는 수용될 수 있었고 복지정책수립의 문제는 '80년대에야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사회의 경우, 빈약한 시설과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학당국에 대하여 교수·학생·직원을 위한 복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공식적인 요구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밀어닥친 民主化의 물결은 경제정책과 함께 公正 分配와 서비스를 요구하는 조직된 사회운동이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표출시켰고, 특히 불우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풍조에서 대학사회의 복지문제는 대학당국의 公式的 福祉政策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복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다룰 수 없고, 또한 근대사회에서는 가족이 가족성원의 복지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成員의 福祉問題를 해결하는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근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삶의 요인 내지 요소라고 간주된

다. 이제 대학 복지정책을 고찰하기 위하여 대학공동체의 기본적 복지요건, 복지자원의 개발, 복지자원의 할당과 분배 등 제반 정책요인을 간단히 고찰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大學共同體의 基本的 福祉要件

대학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은 일단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분야 자체가 매우 혼란한 분야이며,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은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일차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학 복지문제는 국가의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복지정책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에서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意圖的·組織的 福祉 對應策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대학사회의 복지정책은 어떤 맥락에서 관계가 있으며, 대학공동체가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위 복지국가의 등장이다. 福祉國家란 국가존립의 일차적인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법은 매우 중요한 행동 내지 법 규범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의 生存權을 현실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할 때에 요청되는 법적 장치를 社會福祉法이라고 하고, 정책적 장치를 社會福祉政策이라고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社會變動에 따라 생존권보장의 실현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생존권의 구조가 개인 생활상의 문제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사회

변동에 따라 생활상 문제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 지므로 生存權 실현의 이념과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에서 대체로 생활상의 내용은 빈곤, 질병, 주거, 무지,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의료, 주택, 교육, 개인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등의 프로그램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부로서 教育福祉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또다시 대학 복지정책을 논하는 것은 그것이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간에 산업사회 안에서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목적을 일차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 구성원들의 생존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生存權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말하자면 國家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의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복지정책 내지 복지대책이 생존권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숙고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대학의 모든 教育政策과 行政이 대학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준거를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실정에서 대학교육의 목적 역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대학의 복지정책은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한다.

대학의 복지대책은 생존권 이념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社會的弱者로서의 대학 구성원의 복지문제를 일차적으로 취급해야 하지만, 전체 대학 구성원의 생활상 문제를 취급하는 福祉對象의 확대·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결되어야 할 欲求 혹은 생활상 문제의 內容·構造에 있어서도 직접적·구체적 문제로부터 간접적·추상적·사회환경적 성격을 띤 대학 생활상의 문제로 확대·변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공동체의 基本的 福祉要件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첫째, 대학복지란 대학 구성원의 幸福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프

로그램과 함께, 대학내 복지정책(대책)을 통해서 社會的·教育的 障害을 예방·경감시키기 위한 대학당국과 대학공동체의 체계적·조직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공동체의 성격은 단순한 교육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구성원이 福祉共同體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 탐구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격의 도야는 대학복지 이념의 실천으로부터 그 체험적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제한된 대학의 福祉資源을 교수·직원·학생 복지에 할애하는 과제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복지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적 가치인 平等性(equality), 公平性(equity), 適切性(adequacy) 등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정책이란 용어는 ‘행동지향적’, ‘문제지향적’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指向的 主體는 제단·교수·학생·직원 집합체로서의 학교당국이 공식적인 복지정책기구로 활동해야 한다.

넷째, ① 제정(임금, 연구비, 장학금, 수당, 보험, 강사로 등), ② 보건과 의료(의료보험, 대학병원, 진료소, 위생,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 ③ 학생·직원·교수들의 대학생활(편학환경, 작업환경, 연구환경 등)과 관련된 시설·공간, ④ 대학 구성원의 주택(기숙사, 무주택 교직원의 주거, 학교 주위의 하숙시설 등), ⑤ 고용과 승진의 기회(학생의 취직·부직, 교직원들의 승진기회), ⑥ 교직원 자녀들의 교육비, ⑦ 출퇴근과 관계된 교통수단, ⑧ 특별한 복지욕구를 지닌 학생들의 복지(각종 장애인, 불우학생, 응급에 처한 학생 등) 등등 여러 가지 대학내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집단(교수·학생·직원)의 特殊 福祉欲求에 상응하는 대학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教授福祉의 경우 ① 연구비 수혜, ② 교수업무량 축소를 통한 연구활동 증진, ③ 연구실의 제반 여건 개선, ④ 휴식공간 확보, ⑤ 안식년 제도 개선 등 교수의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

런된 복지요건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時間講師에 대한 강사료, 교통비, 사무실 제공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學生福祉의 경우 ① 장학기금 확충, ② 강의실의 제반 여건 개선, ③ 기숙사 시설 확충, ④ 학생자치단체(학생회, 동아리, 학회 등)의 활동 여건 개선, ⑤ 의료·양호 시설 개선, ⑥ 운동 시설 확충, ⑦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⑧ 문화시설(연극무대, 음악감상실 등), ⑨ 대학식당의 식사문제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복지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기회, 졸업후 취업문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 등 학생들과 관련된 복지문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行政職員 福祉의 경우 ① 임금과 수당, ② 자녀교육, ③ 근로환경, ④ 승진기회, ⑤ 주택·교통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대학공동체내 하위집단들의 기본적 복지욕구와 요건들이 책임있는 대학당국에 의해 公式的 福祉欲求로 수렴되고,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해결 의지표명과 기본정책 수립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制度化된 傳遞體系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집행될 때 대학공동체는 福祉共同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복지정책은 복지프로그램의 개선과 개발, 보다 질적·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그 目標로 삼아야 한다.

4. 大學福祉를 위한 福祉資源의 개발·할당 및 분배정책

사회복지정책 내지 대학복지정책의 분석과 통합은 福祉資源의 개발·할당·분배라는 기본변수를 갖고 고찰함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미 언급된 바, 우리 대학사회가 외형적으로 비대해짐에 따라 대학인구 역시 급격하게 팽창했다. 교육기회의 확장과 대학재정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증가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제한된 대학의 복지자원(공간·시설·제도·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대학공동체내의 하위집단들간에 날카로운 갈등을 초래해 이기적인 집단행동까지 표출되고 있다. 등록금인상과 임금

상승의 대립관계, 연구실·강의실 확보와 학생단체나 서클들의 공간확보에 따른 갈등, 주차장 활용권 배분에 따르는 시바, 운동권학생들의 활동과 면학분위기 조성 간의 마찰, 운동장·회의실·문화시설 등의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대학구성원간의 불협화음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사회내의 이러한 문제는 가장 활발한 젊은이의 삶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공간과 복지시설을 확보하겠다는 학생들의 정당한 사회행동인지도 모른다. 복지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복지자원, 특히 財政 擴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이사회와 구성이나 대학총장 선출과정에서 나타난다. 누가 대학재정 확충에 가장 適格인가에 따라서 이사회 총장의 자질·자격 및 능력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결국 대학공동체의 복지문제 해결은 재정의 확보로 가능하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단순히 복지재정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의 가치·이념·정책·제도·행정·과학적 이론·기술·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되어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대학공동체의 복지욕구는 광대하므로 제 아무리 福祉費用을 증가시킨다 해도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1) 福祉資源의 開發

대학공동체의 복지정책(대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福祉資源 開發이다. 대학 구성원(하위집단들)의 복지요구가 대부분 재정자원의 확충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학당국은 대학복지의 증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강구해야 한다. 대학복지의 教育的 意味를 고려해서라도 학교의 정규예산에서 복지비를 더 많이 할애해야 할 것이다. 먼저 財源의 재정적 책임 강화, 同窓會를 통한 모금, 企業體의 재정투자가 결실히 요구된다. 政府의 대학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적 차원의 것과는 동시에 대학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자원의 개발은 財貨 유형 외에도 대학공동체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 物質的·象徴的 서비스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공간과 시

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자원개발이 되며, 대학 구성원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내의 福祉理念 開發도 커다란 복지자원이 된다. 결국 대학공동체 구성원이 외부의 복지자원에 의존하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스스로 복지자원을 創出해 나가는 공동체운동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복지자원의 개발방법을 개선하는 길은 정부의 보조에 입각한 公的 財源 조달에 달려 있다. 또한 정부당국에서 각 대학에 교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지도를 추진함과 같이 대학공동체의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에도 강력한 행동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福祉資源의 割當

사회복지정책의 두번째 기본과정은 사회구성원에게 기능의 量과 質에 입각한 地位를 할당해주는 결정이다. 대학교육의 수행이라는 전체 작업량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나 기능 혹은 과업에 따라서 복지자원을 할당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복지자원과 관계된 지위의 할당은 우연이 아닌 合理的 規定·類型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대학공동체는 대학을 창설·운영하며 대학교육을 가능케 하는 재단과 이사진에게 법적·전통적으로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교육수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에게는 전통적·전문적 권위와 지위가 주어진다. 반면 대학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행정적 지원을 감당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은 대학사회에서 보다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특히 직원 노동조합은 대학사회의 새로운 권력단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모든 결정사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학생회라는 강력한 압력단체를 조직하여 학생 이익을 옹호하고 쟁취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학생들은 많은 대학의 운영이 학생 등록금에 높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대학의 중요한 행정과 정책결정에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히 반영하며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대학의 독특한 하위단체들의 地位割當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힘의 역학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재정 충당의 책임을 놓고 학생과 이사회가 갈등이 도출되었다. 반면 대학행정의 직무수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대두로 行政의 獨立을 주장하는 행정직원과 교수들 간의 마찰도 발생하여, 이에 따르는 보수 규정의 조정 요구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학공동체 안에서의 지위할당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 복지자원의 接近機會를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대학교수나 직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혜택, 특히 봉급에 대한 稅制에 대하여 새로운 사회적 해석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 인정되어 사회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던 대학사회의 社會的 地位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대학복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지위할당의 변화 추세는 우리 사회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변천함을 보여 주며, 이에 따라서 복지자원의 배분이나 할당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변화 추세는 대학 구성원의 복지욕구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자원(임금정책 등) 할당을 보장해 주고, 적능과 기능 및 다른 기준에 터하여 봉급이나 여러 가지 수혜의 정도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3) 福祉資源의 分配

사회복지정책의 세번째 주요한 과정은 사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사회 구성원의 생명 유지와 생활을 향상시키는 全體資源에 접근할 수 있는 權利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補償', '一般的 資格' 및 '束縛'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이해는 오늘날 대학 복지정책의 수립 내지 복지대책의 재정립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無原則의 혼란상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와 직원 간의 임금 및 보수규정에 대한 시비 문제가 그렇다.

補償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면

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교수나 행정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찰을 통해 복지자원의 분배에 뒤따르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도 대학 복지정책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一般的 資格의 개념은 한 사회(대학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 혹은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의 개념은 공통적일 수도 있고 범주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가 있고, 대학내의 공공복지서비스(예컨대 보건교육, 레크리에이션, 위생 등)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보상 및 일반적 자격과 관련하여 두 개의 특수한 개념을 혼돈 내지 동일시하거나 한 개념만을 고의로 취사선택하여 대학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평준화·특권화하려는 시도는 대학 복지정책의 정립에 있어서 갈등과 역기능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束縛이란 '부정적 보상' 혹은 '부정적인 일반적 자격'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권리의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일반적인 제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속박은 대학공동체에서 개인이나 하위집단의 보상과 일반적인 권리를 분배할 때 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공동체 안의 권리와 자유는 무제한적·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긍정적 정책기능을 하고 있다. 대학사회의 복지자원 분배 원칙이 근무연한·직급·직능 등에 있어 지나친 不平等을 초래할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성·공평성·적절성이라는 복지정책의 핵심적 가치가 재음미되어야 할 시점이다.

5. 大學 福祉政策의 改善方向

대학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의 교육공동체라는 유일한 관점에 삶의 터전으로서의 福祉共同體라는 관점이 첨가되어야 할 역사적 시기에 봉착하고 있다. 대학의 외형적 비대에 뒤따른 대학인구의 팽창은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초래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非組織的·非體系的인 분산적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대두되는 대학복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대학사회는 지금 재단·이사진·교수진·행정직원·학생집단이라는 하위집단들의 전통적 지위나 권리 배분을 부인하고 새로운 힘의 관계를 구축하며 제한된 福祉資源을 쟁취하겠다는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같은 대학사회내에서 집단이기주의마저 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복지정책 내지 복지대책에 대한 전면적·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공동체의 福祉理念을 수용하여 대학사회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자원의 개발과 할당 및 배분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인 복지요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내의 여러 복지자원을 개발·조직하여 그 효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자원의 분배시 평등성·공평성·적절성을 극대화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대학사회를 위한 福祉財源 투자가 교육투자와 동일선상에서 강력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